「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가결되었다. 동 법률안은 2021년 1월 15일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동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제2조제1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소정의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규정한다(제2조제1호).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산안법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의 해석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66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99

2. 적용범위

현행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전제로, 동법시행령 [별표 1]에서 산안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 법문상으로는 "이 장(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3장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조항(제4조, 제5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동법 제15조 또한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

현행 산안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동법 제39조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안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산안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묻지 않고 '사업주'를 수범자로 한다.

이러한 산안법 규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66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경영책임자라는 자연인(自然人)이 수범자이다.

99

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수범자가 사업주인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경영책임자라는 자연인(自然人)이 수범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는 개인을 수범자로 한다.

의무의 주체에 관한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러한 차이는 각 법률 위반죄의 벌칙규정의 적용방식에 차이를 가져온다.

4. 벌칙규정의 법형식의 차이

산안법 제167조 제1항은 동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안법 제38조 등의 수규자는 '사업주'이므로 산안법 제167조 제1항은 그 행위주체가 '사업자'로 한정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그런데, 산안법은 제173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67조 제1항…(중략)…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위가 산안법 제1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분자인 '사업주' 외에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는 이러한 양벌규정의 해석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① 법문이 범행의 주체를 사업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종업원 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부정설),

② 양벌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 등이 직접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있어서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긍정설),

③ 사실적인 고찰방법을 통하여 사업주라는 개념 속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를 대리하여 또는 그의 명에 의하여 행위를 하는 종업원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 일종의 행위자표지의 확장을 통하여 벌칙 본조에 의하여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행위자표지 확장설)가 대립한다.

종래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 양벌규정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는 입장에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긍정한바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66

산안법의 경우 본래의 행위주체는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는 소위 '양벌규정의 역적용'이라는 방식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의 행위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개인이고, 사업주가 법인 또는 기관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인 등을 벌금형에 처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9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를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벌칙규정에서도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자연인을 범죄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하여 행위주체가 자연인임을 전제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라는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산안법의 경우 본래의 행위주체는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는 소위 '양벌규정의 역적용'이라는 방식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의 행위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개인이고, 사업주가 법인 또는 기관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인 등을 벌금형에 처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6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왕 입법된 만큼,
향후 동법의 입법취지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법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99

5. 소위 '징벌적 배상'의 도입

산안법은 동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따라서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에 터 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벌을 규정하는 외에 동법 제15조 제1항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위 법문을 보면 이러한 배상의무의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이다. 따라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은 별론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6. 맺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 벌칙규정의 법형식 등에 있어 기존의 산안법과는 그 접근이 상이한 점, 우리 법체계에서 여전히 생소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 점 등으로 인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에 못지않게 동법 시행에도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공포되기 전의 '법률안'의 단계이지만, 향후 동법의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쟁점들을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찬반의 입장은 나뉠 수 있다. 법이론적으로 이론적 정합성을 탓하는 견해도 충분히 예상되고, 이러한 비판에 경청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동법의 입법취지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왕 입법된 만큼, 향후 동법의 입법취지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법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